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644
----------	-------

발의연월일 : 2026. 2. 6.

발 의 자 : 전용기 · 이학영 · 송재봉
박홍근 · 진성준 · 김주영
윤준병 · 이연희 · 안태준
정준호 · 문진석 · 이건태
최혁진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화물의 안전 배송을 위한 조치 등 법률에 규정된 조치와 생활물류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택배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 대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위임규정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 향상”의 경우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가 소비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결제정보,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규정은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택배서비스사업자의 등록의 취소,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의 인증의 취소 요건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하여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소화물 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보다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 향상을 위한 조치”를 개선명령 및 권고 사항 중 하나로 법률에 상항하여 규정하고, 택배서비스사업자의 등록의 취소,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의 인증의 취소 요건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10호, 제19조제1항제8호 및 제39조제5호 신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1178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시정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9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시정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39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 향상을 위한 조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택배서비스사업자의 등록취소 및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의 인증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제10호 및 제19조제1항제

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법률 제21178호 생활물류서비스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제15조(등록의 취소) ① 국토교통 부장관은 택배서비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 호, 제6호 또는 제7호의 경우에 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9. (생략) <u><신설></u> ② (생략) 제19조(인증의 취소) ① 국토교통 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	법률 제21178호 생활물류서비스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제15조(등록의 취소) ① ----- ----- ----- ----- --. ----- ----- -----. 1. ~ 9. (현행과 같음) 10. <u>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정 보 보호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 지 아니한 경우</u>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인증의 취소) ① ----- ----- ----- ----- ----- -----.

여야 한다. 1. ~ 7. (생략) <u><신설></u> ② (생략) 제39조(개선명령 및 권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며,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확보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명하거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 4. (생략) <u><신설></u> 5. (생략)	-----. 1. ~ 7. (현행과 같음) 8. <u>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u> ② (현행과 같음) 제39조(개선명령 및 권고) ----- -----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u>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 향상을 위한 조치</u> 6. (현행 제5호와 같음)
--	--